

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

의안 번호	24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및 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정성별영향평가(안 제2조)

-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
-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법
- 특정성별영향평가 긴급 실시의 경우
-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반영

나.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)

-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
- 위원회 심의·조정 내용

다. 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, 위촉직 위원(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) 6명으로 구성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5조)
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

마. 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)

- 위원장의 직무, 위원장의 직무대리, 위원장의 회의소집
-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위원회의 안건 관련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

바. 간사(안 제7조)
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함

사. 운영세칙 등(안 제8조)

-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6

- o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)

다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o 입법예고(2020.4.16.~ 5.6.) 결과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2)
- o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o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별첨 3)
- o 성별영향평가 :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별첨 4)
- o 학생인권영향평가 :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(별첨 5)
- o 관계법규 : 별첨 6

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
4.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
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, 교육혁신과장, 성별영향평가
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가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
2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

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
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
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
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
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
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
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제8조(운영세칙 등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고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 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운영 경비, 컨설팅 비용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2항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운영,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정희 (02-3999-546)

[별첨 2]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조O아, 김O진, 문O선, 이O정, 김O하, 강O우, 하O순, 양O리, 이O정, 이O을, 심O진, 배O미, 김O선, 정O원, 이O정, 인O은, 정O웅, 이O은, 손O경, 김O진, 박O희, 김O정, 이O애, 차O경, 김O자, 윤은경, 이O숙, 황O인, 조O상, 이O일, 문O정, 이O선, 최O선, 유O숙, 송O선, 백O진, 강O덕, 황O혜, 박O순, 김O희, 백O은, 김O하, 바른시민연대, 그외 익명 제출자 26명</p> <p>김O현, 임O아, 임O수, 유O준</p>	<p>○ 성별영향평가는 남녀갈등 조장, 페미니즘 사상 주입, 성소수자 인 권과 관련되므로 전체 조항 삭제 (제정 반대) 요구</p> <p>○ '성평등' 용어를 '양성평등'으로 수정</p>	<p>○ 미반영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, 제출의견 관련하여 해당 사항 없음</p> <p>○ 미반영 -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하여,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임</p>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관	행정6급	이지은
입안주관부서	민주시민생활교육과	통보일	2021.5.3.
관련조문	검토결과		조치사항
전체 조문 (제정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조례 제정안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의 위임 규정에 따라 ‘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’, ‘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’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함 - 신설되는 동 조례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이 특정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대한 절차적 예측가능성과 공개성을 확보되었으며, 위원의 제척·회피·해임 및 해촉 등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규범력이 강화됨 - 단,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3조에 규정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권한은 ‘특정성별영향평가’에 국한하지 않으므로, 먼저 일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보편적 실시 규정 또는 “법령 등과의 관계” 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<p>※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14개 시도교육청 중 8개¹⁾ 교육청은 일반적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또는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</p>		<p>“원안동의” (참고의견)</p>

1) 강원도, 경기도, 경상북도, 광주광역시, 부산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충청남도 등

[별첨 4]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
관리번호	2021A서울교육014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
	담당자명	박정희	전화번호	02-399-9546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
	담당자명	김소영	전화번호	02-399-9675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1년 05월 04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1년 05월 04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05월 04일</p>				

[별첨 5] 자치법규·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**자치법규 · 단위사업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**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안					
담당부서	민주시민생활교육과	담당자	직급		성명	박정민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고태훈, 권정우, 김희진, 노희창, 송지은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. - 제정안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금지 및 학생참여 원칙을 준수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. 					원안동의

「성별영향평가법」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3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18. 3.27.>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